사단법인 브레멘 한국학교 정관, 2017

§ 1 이름, 위치, 회계 연도

- 1.1 협회의 이름은 브레멘 한글학교 이다.
- 1.2 협회의 위치는 브레멘이다.
- 1.3 VR 3837 HB 등록 번호로 브레멘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 1.4 회계 연도는 역년이다.

§ 2 협회 목적과 공익성

- 2.1 협회는 전적으로 국세 기본법의 세금 혜택 목적 조항에 정의 된 즉각적인 공적 목적을 따른다.
- 2.2 협회의 목적은 교육 지원, 국민과 직업적 교육 즉 학생 지원과 같은 지원, 국 제적인 의식 지원, 세계관의 이해와 모든 다양한 문화의 대한 포용력에 있다. 협회의 목적은 독일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한국어 언어 교육에 대한 지원, 이른바 독일과 한국 사이에 다문화 이해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
- 2.3 정관의 목적은 특히 개발중인 언어학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교의 활동과 하나의 교육안을 실행 함으로서 실현화 된다.
- 2.4 협회는 스스로 활동 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

§ 3 자금의 사용

- 3.1 협회의 자금은 오직 정관에 맞는 목적으로만 사용 되어져야 한다.
- 3.2 회원들은 협회의 자금을 기부금으로 취득할 수 없다. 협회의 목적과 다른 지출은 있을 수 없으며,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높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

§ 4 회원 자격의 회득

- 4.1 협회 회원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사람만 가능하다.
- 4.2 회원 가입의 전제 조건은 서면상의 임원회에서 청할 수 있는 가입서(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률상의 대리인이 가입신청서에 싸인해야 한다.
- 이러한 경우 따로 서면상에 회비 납부에 관한 첨부서를 의무화 해야 한다.

4.3 임원회는 자율적 재량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결정한다.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가입자에게 거부에 대한 이유를 알릴 필요는 없다.

§ 5 회원 자격의 종료

5.1 회원 자격은 사망, 제명, 회원리스트에서의 삭제, 탈퇴를 통해서 종료된다. 5.2 탈퇴는 임원회 임원에게 서면상의 설명서로 제출한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의 대리인이 탈퇴 사유서를 제출한다. 탈퇴 및 해약 고지 기간은 2달이다. 5.3 적어도 연간 회비나 높은 부과금을 §6.3 조항에 의거해 만기 기간을 넘거나그 밖에 두 번의 경고에도 체불액이 있을 시에,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회원리스트에서 삭제 될 수 있다.

5.4 협의 이익을 거친 방법으로 유죄의 상해를 입힐 시에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협회에서 제명 시킬 수 있다. 의결 전에 임원회는 그 회원에게 구두상으로나서면상의로 입장 표정을 해야만 한다. 결의는 서면상으로 되어져야 하며 그 회원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의결에 반하여 그 회원은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항소할 수 있다.) 총회 소집은 한달 안에 임원회를 통해 제출된다. 임원회는 한달 안에 만기 기간 에 맞는 총회를 소집하고, 종결하면서 그 제명에 관하여 결정한다.

§ 6 회비

- 6.1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와 회비가 부과된다. 각각 금액은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6.2 특별한 자금조달 계획은 연회비의 가격에 따라 부과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6.3 가입비의 금액과 만기, 회비, 부과금은 총회에 의해서 확정된다.
- 6.4 임원회는 가입비, 회비, 부과금을 사회복지 적인 이유로 전액이나 일부를 면제 또는 연기 할 수 있다.

§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 7.1 모든 회원은 제안, 토의를 통해서 뜻을 세울 권리가 있고,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2 모든 회원은 협회에 설치된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회원들의 지인들이나 그들의 아이들 또한 학교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수업료를 부과해야 한다.
- 7.3 회원들은 협회 안에서의 활동에 한해 위원회의 선포한 내칙을 준수 해야 한다.

7.4 각각의 주소 변경은 임원회에 알린다.

§ 8 협회 기관

협회의 기관은 임원회와 총회이다.

§ 9 임원회

- 9.1 협회의 임원회는 § 26 BGB 정의에 의거에서 교장, 교장 대리인, 회계로 구성된다.
- 9.2 협회는 2명의 임원회 임원으로 대변되어 진다.
- 9.3 임원회는 근본적으로 무급의 활동이다; 그러나 임원회 임원들은 업무비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된다.

봉사료의 범위는 부적당하게 높아서는 안됀다. 그 적정 기준은 협회의 공적 목표 설정에 있다.

이 총회에서는 각각 임원들이 계약들을 결정하고 해약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 10 임원회 업무 권한

임원회는 정관을 통해서 다른 협회 기관에 양도하지 않는 이상, 모든 협회의 업무에 권한이 있다, 특별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총회 소집 및 준비 아울러 의제 설정
- b) 총회의 의사 결정 실행
- c) 예산안 준비 및 회계 보고, 연례 보고 준비
- d) 회원 가입에 관한 표결
- e) 자금 사용에 관한 표결

§ 11 선출과 임원회의 재직 연한

- 11.1 임원회는 총회를 통해서 선거로부터 계산 되어 2년 동안을 위해 선출 된다. 이것은 새로 선출 될 때 까지 재직 되어 진다.
- 11.2 임원회 회원들은 각각 선출된다. 재선출도 허용된다.
- 11.3 임원회는 오직 협회 회원들로 선출되어 진다. 회원자격이 끝날 수에는 임원회 재직도 종료된다.

11.4 임원회의 회원이 조기 사임시에는 사임한 남은 재직 연한을 위해서 새로운 후임자를 선출 할 수 있다.

§ 12 임원회의 회의와 의사 결정

12.1 임원회는 교장 이나 교장 대리인을 통해서 소집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의사 일정을 고지 할 필요는 없다.

12.2 소집 일정 기간은 10일 이다. 이 기간은 보내는 날짜를 시작으로 한다.

12.3 임원회는 적어도 임원회 구성이 2명 이상이면 의결 능력이 있다.

표결를 할 경우 유효 투표가 과반수 이상이면 결정된다; 가부동수 일 경우,교장 대리인이 부재일 경우, 교장의 투표가 결정된다.

12.4 임원회는 모든 임원회 회원이 찬성할 경우 서면상의 처리로 결정할 수 있다.

§ 13 총회

13.1 총회에서 모든 회원들은 각각 하나의 투표권이 있다.

미성년자는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대리되어 진다.

13.2 투표권의 수행은 서면상의 전권 위임되어 다른 회원이 행사 할 수 있다. 이 전권위임장은 매번 총회시 따로 수여 되어 진다; 한명의 회원이 3명 이상의 투표를 대리해서는 안된다.

13.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다룬다;

- a) 내년도 예산 계획안 허가; 임원회의 연례 보고 수령; 임원회 퇴출
- b) 입학금, 회비, 기부금 규명
- c) 임원회의 회원들 선출 및 해임
- d) 정관 변경과 협회 해산에 관한 표결
- e) 임원회의 제명결정에 반한 소집에 관한 표결
- f) 회계 감사 선출
- q) 회계 감사 보고

§ 14 총회 소집

14.1 정규적인 총회는 상반기에 매년 한번씩 열린다. 임원회를 통해서 2주 전 이행 기한 아래 총회 일정이 명시된 서면상으로 소집된다.

그 기한은 초대장이 발송된 날로 시작된다.

이 초대장은 협회가 마지막 회원까지 이미 알고 있는 주소로 알려 졌을 때 유효하다. 이 총회 일정은 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14.2 모든 회원들은 늦어도 총회 전 일주일까지 임원회에게 의사 일정에 관한 추가 발의를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총회 사회자는 총회 시작과 함께 그 추가 발의를 알린다.

14.3 의사 결정의 추가 발의에 관한 청구는 총회에서 논의 되어지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 15 임시 총회

15.1 임시 총회는 협회의 이익이 요구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원회에 서면으로 목적과 이유가 명시되어 신청하면, 임원회에 의해서 소집된다.

§ 16 총회의 표결

16.1 총회는 교장, 교장 대리인 아니면 회계가 이끈다. 만약 교장과 교장 대리인이 없을 시에는 총회에서 총회 사회자를 정한다. 투표 시에 총회 사회자는 표결할 동안 예상 가능한 토론을 선거위원회에 양도할 수 있다. 총회 사회자는 한 명의 공문을 정한다.

16.2 표결의 조항은 총회 사회자가 정한다.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3분의 1이 신청할 경우 표결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6.3 총회는 적어도 전체 회원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했을 때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의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원회는 3 주 안에 두 번째 총회를 똑 같은 의사결정으로 소집할 의무가 있다.

이럴 경우 초대장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다.

16.4 총회는 유효 표수가 과반수일 경우 의결된다; 기권표는 무효로 간주한다. 정관이나 협회의 목적을 변경 할 경우, 협회를 해산할 경우는 4분의 3 이상의 과반수가 동의 해야 한다.

총회에 참석 지 못한 서면상의 투표는 한달 안에 임원회에 먼저 알려야 한다.

16.5 선거에 의해서 누가 더 절반 넘게 유효한 표를 받았는지에 따라 선출된다. 만약 절반이 넘지 못하게 유효표를 받았다면, 다음 후보자간에 누가 더 많이 표 를 얻었는지 결선 투료를 시행한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뽑는다.

똑 같은 표를 얻었을 경우 회의 사회자의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다.

16.6 총회의 결의는 서류상으로 남겨져야 하며, 항상 공문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 17 회계 감사

17.1 임원회의 임원이 아닌 두 명의 회계 감사를 총회를 통해서 매년 선출 되어 져야 한다. 재선출이 허용된다.

17.2 회계 감사원들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적합한 지출을 했는지 회계부를 검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18 협회 해산

18.1 협회 해산은 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과반수 유효표가 나올 경우 해산 되어 질 수 있다.

18.2 총회에서 다른 결정을 못할 경우, 교장과 교장 대리인,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모두 협회를 청산 할 수 있다.

18.3 협회가 해산하거나 중지 될 경우 아니면 세금 혜택 목적이 폐지될 경우 협회의 자산은 브레멘 시의 즉각, 전적으로 공익성을 위한 가능한 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 본 정관은 독일어 및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나 독일어본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해석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독일어본을 우선으로 한다.

브레멘, 19.05.2017 교장 허송희